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·산업경쟁력강화
관계장관회의
26-23-3 (공개)

건설공사 불법하도급 · 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· 운용계획

2026. 7. 22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	2
III. 세부 이행 방안	3
IV. 추진 일정	4

I. 추진배경

- **건설공사는 다단계 도급구조**(발주자→원·하수급인→노동자) 등으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**대금체불**에 취약하며, **하수급인·노동자 등 연쇄 피해** 발생
 - ※ 건설업 임금체불액 : ('23) 4,264억원 → ('24) 4,657억원 → ('25) 4,028억원 → ('26.4) 1,176억원
- 이에, 건설현장에서의 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위해 **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**(건설법 개정, '19.6~)
- **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'25.9월 「임금체불 근절대책」을 마련**, 공공에서 사용 중인 국가전자대금시스템 '**하도금지킴이**' 확산 추진
 -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'**전자대금지급시스템**'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 확대하고 이를 **활용**할 수 있도록 추진

<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별 사용자(기관) 수 >

	공공공사				민간공사*	
시스템	하도금지킴이	상생결제	체불e제로	클린페이	노무비닷컴	클린페이
운영기관	조달청	중기부	철도공단	페이컴스	NICE디앤알	페이컴스
기관수	3,149	68	1	25	6,310	30

* 100대 건설사의 76%가 이미 민간 개발 시스템 활용 중

- 정부는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**민간현장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**, 공공+민간 현장에 **발주자 직접지급제** 도입 중*
 - *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안 법사위 통과('26.5) 및 본회의 상정대기, '27.1월 시행예정

⇒ **법 개정과 함께 실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인 하도금지킴이 개편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**

< [참고]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개선 시 고려사항 >

- (기능) 現 하도금지킴이는 전통적인 건설공사 **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**, 발주자 직접지급 구현을 위해서는 **단순개선만으로는 한계**
 - 특히, **지급관계, 수령방식** 등을 새롭게 구현해야 하는 등 **시스템 구조 재설계 필요**
- (운영주체) **하도금지킴이 운영주체**(조달청)와 건설현장의 감독·관리 및 시스템 주 사용 부처(국토부)의 **이원화로 비효율성**, 하도금지킴이 기능개선 체계의 행정불편 발생

*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및 민원해결 등은 국토부로, 하도금지킴이 기능개선 요청 등은 조달청으로 분산, 하도금지킴이 기능개선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관련되어 '20년 이후 개선사항 8건 중 건설법 관련사항 6건

Ⅲ. 세부 이행방안

- (**추진방식**) 재경부, 국토부,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「관계기관 합동 TF」를 구성하여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
 - 시스템을 최대한 조기구축할 수 있도록 既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 전략계획(ISP, 3억원)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방식·예산 등 산출
 - * 국토부도 '26년 추경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예산(1.33억원)을 반영 되었으나 기획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내용 및 예산중복 등을 고려하여 불용처리
- (**제도개선**)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(조달청→국토부) 및 운영위탁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(제7조의2), 건산법 시행령(제26조의8) 개정

<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>

제26조의8(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(신설) 4조의2.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·운영

- (**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**) 건산법 개정안 통과 시 '27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, 차세대 국가시스템 개시('28) 前까지 대안 필요
 - 국가시스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·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, 민간시스템 등의 활용 지원(국토부 고시 제정*)
 - * 공공공사, 민간공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고시할 예정
- (**건설공사 외 하도급 관리**)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舊 하도급지킴이의 건설공사 외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검토(^{중기부}상생결제* 활용 등)
 - * (상생결제시스템 이용실적, '25년) 852개사(공공 449개, 민간 403개) 이용, 189.1조원 지급
↳ 합동TF에서 민간 중소기업장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 필요

IV. 추진일정

세부 이행과제	소관부서	추진시기
1.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관련 ISP 연구용역		
ISP 연구용역 착수	조달청	'26.7.1~
ISP 중간결과물 정리	조달청·국토부	~'26.8월
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 작성	조달청·국토부	'26.10월
2.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		
하도급지킴이 이관 등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	재정경제부	'26.12월
건설산업정보원 운영위탁 등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	국토부	'26.12월
3.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		
발주자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	국토부	'26.12월
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고시 제정	국토부	'26.12월
4.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		
SW사업 영향평가, 보완성 검토 등 발주 준비	국토부	'27.1월
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발주(계약)의뢰	국토부	'27.3월
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	국토부	'27.4월~12월
국자원, 행안부,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	국토부	'27.5월
시스템 시범운영 및 시행	국토부	'28. 1월~